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 - 14427호

시행일자 2024. 2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법률(제20214호) 개정·공포 알림
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2214(2024.2.6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법률(제20214호)이 2024. 2. 6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·공포되었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·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·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,
-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,
-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·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,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,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

※ 동 개정 법률은 2024.2.6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식약처 공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제20214호) 각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(각과개원의협의회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한공중보건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